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21027호, '25. 8. 14. 공포, '2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을 위해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을 위한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33조제5항제3호)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건축사사무소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원활한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고시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3조제7항제7호 및 제8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31조제1항제26호 및 제32조제3항제9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를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6호 중 “2급”을 “3급”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8호 중 “제31조제1항제20호·제21호·제23호 또는 제26호”를 “제31조제1항제20호·제21호·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1조제1항제26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제33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이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측량 및 수로조사, 제3호의 품질검사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이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업체

제33조제7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7.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제7호의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① ----- ----- ----- ----- -----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u>2급</u> 이상 직원	26. ----- <u>3급</u>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 무관련성의 범위) ① · ② (생 략)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 무관련성의 범위)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 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③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제31조제1항제20호 · 제21호</u> <u>· 제23호 또는 제26호</u> 에 해당	8. <u>제31조제1항제20호 · 제21호</u> <u>· 제23호</u> -----

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신 설>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7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
체 또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신 설>

9. 제31조제1항제26호에 해당하
는 직원 중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

-----.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
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
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건설기술진
흥법」 제26조에 따른 건
설엔지니어링사업자(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
항제2호나목의 측량 및 수
로조사, 제3호의 품질검사
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

<신 설>

7.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17조제

<신 설>

1항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
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제7
호의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
서를 작성하기 위해 국세청장에
게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
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관련 자
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453